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가합505436 판결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可 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 종결 2016. 7. 11.

판결 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은 1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자동차 매매업, 타이어 및 자동차 관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2. 10. 16.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 C은 2014. 1. 28.부터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피고 B의 주주인 원고, 피고 C, D, E은 2012. 3. 2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직 사임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위 회의 이후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2012. 3. 21. 원고에게 'B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결의 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원고는 2012. 3. 22. 위 결의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다시 F에게 'B 주주총회 결의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원고가 이메일로 송부한 'B 주주총회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피고 B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관련 직위를 사임하고 모든 업무를 정지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피고 B의 지분 2,420주(193,000,000원) 및 G에 제공된 제주도 토지 담보설정 해제가 이행될 때, 차기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일괄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3. 양도 양수에 관한 쌍방간의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주식지분 2,420주(193,000,000원)에 대한 지급을 받은 후 피고 C에게 주식을 양도한다.
 - 피고 B의 자산, 비품 등 업무일체를 인수인계한다.
 - 피고 B의 이사인 피고 C, D, E은 2012. 5. 30.까지 원고의 주식지분에 대한 대가 19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2012. 3. 1.부터 2012. 5. 30.까지 연 7%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단, 불이행 시 2012. 5. 30. 이후부터는 민법에 따라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 원고의 급여는 2012. 1. 1.부터 인수인계가 끝나는 날까지 매달 10일에 월 2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현재까지 미지급된 2012년 1, 2, 3월 급여에 대하여는 2012.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불이행 시 민법에 따라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원고에게 추가 지급한다.

4. G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원고 모친 명의 제주도 토지(담보 설정금 80,000,000원)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와 동시에 담보설정을 해제하고 G에 다른 담보를 제공한다.

5. 결의안이 통과되면 양도양수 증서에 서명하며, 담보건 해제 완료시 원고는 대표이사 사임서에 서명한다.

라. 2012. 4. 30. 피고 B의 제일은행 계좌에 '원고 가수금'이라는 명목으로 5,406,000원과 5,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의 주주인 원고, 피고 C, D, E은 2012. 3. 20. 주주회의에서 피고 C이 원고가 소유한 피고 B 주식 2,420주를 대금 193,000,000원에 양수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주식양수대금 193,000,000원을, 피고 B는 미지급 급여 5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2. 4. 30. H의 도매상인 'I상사'의 J에게 타이어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대여금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2. 3. 20.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기초한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주주들이 2012. 3. 2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직 사임문제, 원고의 주식 인수문제, 원고의 급여문제 등을 논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2012. 3. 22.자 메일에 첨부된 'B 주주총회 결의안'과 같은 내용의 확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2012. 3. 22.자 이메일에 첨부된 'B 주주총회 결의안'에는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위 이메일에서 각 이사들(피고 C, D, E을 의미한다)에게 2012. 3. 22.까지 결의안에 대한 서명 결정 여부에 대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위 결의안 제5조에서는 '결의안이 통과되면 양도양수 증서에 서명하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012. 3. 22. 당시에는 위 이메일에 첨부된 'B 주주총회 결의안'에 대한 확정적인 결의나 의사합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 시점 이후에 위 결의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② 위 결의안 제3조에서는 원고가 피고 B의 자산, 비품 등 업무일체를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의 영업용 재산을 인계하지 않고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993 사건). 또한 피고 C은 원고의 해임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9. 24. 그 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비합9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B 주주총회 결의안'의 결의내용에 따라 피고 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이 아니라, 피고 C 등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법적 쟁송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위 결의안에는 피고 C, D, E이 원고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결의안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주식양수대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특정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양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대여금 상환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2012. 4. 30. 피고 B의 계좌에 일정한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김선희, 판사 정지원